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2월 18일

-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최정욱)

1. 제안사유

-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 도민 친화적, 합리적·탄력적 조직으로 전환
- 한시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조정(△1단)

-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 : 존속기간 만료

□ 분장사무 조정

- 우량잡종의 생산·보급업무 농산사업소로 이관(안 제24조, 제46조)
 - 농업기술원 → 농산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관련사무 조정(안 제28조)
 - 환경측정망 운영 → 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
-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공급 업무 삭제(안 제46조)
 - 국가사무 환원에 따른 농산사업소 사무 조정
- 세종사무소 소관사무 범위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민 친화적, 합리적·탄력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 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우량잡종의 생산 및 보급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농산 사업소로 이관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측정망 운영 업무’를 ‘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으로 변경하고, 국가사무환원에 따라 농산 사업소의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공급 업무’를 삭제하며, 세종 사무소의 소관사무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연월일 : 2014년 12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민 친화적, 합리적·탄력적 조직으로 전환
- 한시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조정 (△1단)

-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 : 존속기간 만료

분장사무 조정

- 우량잡종의 생산·보급업무 농산사업소로 이관(안 제24조, 제46조)
- 농업기술원 → 농산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관련사무 조정(안 제28조)
- 환경측정망 운영 → 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
-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공급 업무 삭제(안 제46조)
- 국가사무 환원에 따른 농산사업소 사무 조정
- 세종사무소 소관사무 범위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실·국·단·본부의 설치”를 “실·국·본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 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13조의2를 삭제하고, 제13조의3을 제13조의2로 한다.

제24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를 둔다.

제28조제2호 중 “환경측정망 운영”을 “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보급종”을 “우량잠종”으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농산물 보급종자”를 “우량잠종”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으로 한다.

제56조의4제2호 중 “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제25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포도연구소	옥천군 관내
마늘연구소	단양군 관내
수박연구소	음성군 관내
대추연구소	보은군 관내
와인연구소	영동군 관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u>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하"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u></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u>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u></p>
<p>제13조의2(통합추진지원단) <u>통합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u> 2. <u>통합시 비전 및 지역발전방안 마련</u> 3. <u>하부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수립</u> 4. <u>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u> 5. <u>통합시 교육발전방안 마련</u> 6. <u>기타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사항 수행</u> 	<p><삭 제></p>
<p>제13조의3(혁신도시관리본부) <u>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 략) 	<p>제13조의2(혁신도시관리본부) <u>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p>제24조(소관사무) <u>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 략) 9. <u>우량 잠종·상묘의 생산과 시험 검사 및 잠견 검사용 기계운용 관리</u> 10. ~ 14. (생 략) 	<p>제24조(소관사무) <u>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 13. (현행 10. ~ 14.와 같음)
<p>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생 략)</p> <p>② <u>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잡사시험장을 둔다.</u></p> <p>③ (생 략)</p>	<p>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를 둔다.</u></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환경측정망 운영</u> 및 <u>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u>에 관한 사항 	<p>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u> 및 <u>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u>에 관한 사항
<p>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u>보급종</u>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u>우량잡종</u>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농산물 보급종자</u>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p>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우량잡종</u>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p>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u>세종특별자치시</u>(이하 "세종시"라 한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u>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u> 구축 및 <u>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u>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세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u>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u> 구축 및 <u>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u>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세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u> 및 <u>업무협조</u> 3. ~ 4. (생략) 	<p>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사무연락</u> 및 <u>업무협조</u> 3.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